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276

발의연월일: 2022. 11. 16.

발 의 자:황운하·홍정민·박상혁

김병기 · 한병도 · 장경태

위성곤 · 한준호 · 정성호

정일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또는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보험가입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획득한 뒤, 이정보가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신용정보주체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설계사와 거래하는 사례가 나타남. 이러한 사례에 있어서 위법성 여부의 판단은 개인신용정보의 유상 제공 여부가 아닌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회사등의 개인신용정보 유상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도 제3자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제공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임. 한편,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부제출 법률안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신용정보회사등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의 유상 제공에 관한 입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32조제4항 등).

법률 제 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9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제공 행위와 관련하여 동의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제23조제4항 단서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32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 1항 각 호의 방식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제공하 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타인과의 거래로 지급받는 대 가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33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제3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그 밖에"를 "제공의 대가, 그 밖에"로 한다. 제40조의3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중 "제6항"을 각각 "제7항"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제5호 중 "제4항 또는 제5항"을 "제5항 또는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제8항 또는 제9항"을 "제9항 또는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0호 중 "제7항 또는 제10항"을 "제8항 또는 제1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의 개 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의 행위규칙) ① 본인신용정보	의 행위규칙) ①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의2.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
	용정보 제공 행위와 관련하
	여 동의를 강요하거나 부당
	하게 유도하는 행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
보의 제공 요청 등) ① ~ ③	보의 제공 요청 등)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제3	4
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이용자	
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	
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신용정보 제공・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 2조<u>제6항</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⑦ (생 략)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 지용에 대한 동의) ① ~ ③ (생략)

<신 설>

④ ~ ① (생 략)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① 지 개인신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 이용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7항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
용에 대한 동의)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
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
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타인과의 거래로 지급받는 대
가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u>⑤</u> ~ <u>⑫</u> (현행 제4항부터 제1
1항까지와 같음)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①

1. ~ 3. (현행과 같음)

- 4.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5. (생 략)
- ② (생략)
-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 ① ~ ⑤ (생 략)
 - ⑥ 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은 제32조제7항 및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2. (생략)
 - ⑦ ~ ⑨ (생 략)
- 제34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 경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① (생략)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 정보제공·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2. (생략)
 - 3. 정보를 활용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정보활용의 목적별로 정보활용 동의 사항을 구

4 <u>제7항</u>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 ① ~ ⑤ (현행과 같음)
(6)
제8항
<u>^1 0 8</u>
1.•2. (현행과 같음)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
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① (현
행과 같음)
②
<u>.</u>
1.•2. (현행과 같음)
3

분하여 신용정보주체가 개별 적으로 해당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제32조<u>제4항</u>의 선택적 동의사항으로 한정한 다)

③ ~ ⑤ (생 략)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 실의 조회) ① 신용정보회사등 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신용정보 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생략)
-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u>제5항</u>
③ ~ ⑤ (현행과 같음)
세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
실의 조회) ①
1. (현행과 같음)
2
제공
의 대가, 그 밖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의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40조의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가명정보에 관하여는 제	제외)
32조 <u>제7항</u> , 제33조의2, 제35조,	<u>제8항</u>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	
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4까지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금융위원회(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호	
위원회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	
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	
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u>.</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32조<u>제6항</u>제9호의2에 1의2. ----<u>제7항</u>-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제32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 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신용정보 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1의3. 제32조<u>제6항</u>제9호의2 및 제3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제33조제1항 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1의4. ~ 3. (생략)

② ~ ⑨ (생 략)

제52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4의4. (생 략)
- 5. 제32조<u>제4항 또는 제5항</u>(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5의2. ~ 8.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

1의3 <u>제7항</u>
1의4. ~ 3.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5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②
 1. ~ 4의4. (현행과 같음)
 1. ~ 4의4. (현행과 같음)

-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5의2. (생략)
- 6. 제32조<u>제8항 또는 제9항</u>(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6의2. ~ 18. (생략)
- ④ (생 략)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9. (생략)
- 10. 제32조제3항 · <u>제7항 또는</u>
 <u>제10항</u>(제34조에 따라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반한 자
- 11. 12. (생략)
- ⑥·⑦ (생 략)

•
1. ~ 5의2. (현행과 같음)
6 <u>제9항 또는 제10항</u>
6의2. ~ 18.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5
1. ~ 9. (현행과 같음)
10제8항 또는 제1
<u>1항</u>
11.・12.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